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27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체계	3
2. 관련 제도 및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찬반론	5
3. 주요 조문별 검토	11
4. 종합의견	5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장경태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2025. 6. 11.
3. 회 부 일: 2025.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를 남용한데 따른 폐해의 결과로, 검찰을 폐지하되 이를 대신하여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종전 검사 중심의 일원화된 수사권 체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여러 수사기관이 각기 부여된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권의 다원화 체계로 이행함에 따라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장치가 작동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반면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경합 등으로 국가 수사권 체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가 수사권 행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짐으로써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국가형벌권 실현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음.

수사기관의 다원화·전문화로 인하여 국민이 자신들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떤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여야 할지,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무엇인지, 수사기관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제기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사기밀을 제외한 정보의 접근성을 대폭 신장하는 등 수사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등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고,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자신과 관련된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 민원의 공정한 처리 등 수사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포함한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및 국민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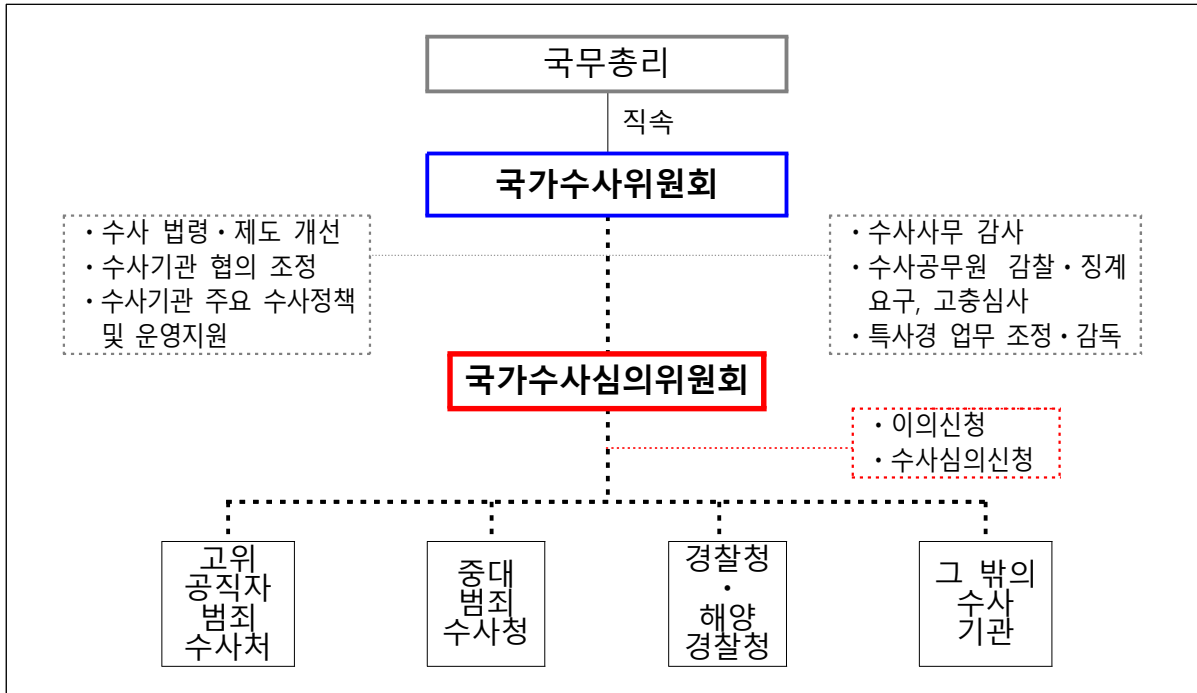
1.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체계

제정안은 각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협력·조정을 도모하고,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위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및 국민주권주의 실현 등을 위하여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협력·조정을 도모하고,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사 절차에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 국민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검찰을 폐지하고 종전에 검찰이 수행하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730호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제2210728호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210732호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원화된 수사기관의 조정·협력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국가수사위원회 제도 구성(안) 개관>



제정안은 6개 장, 43개의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 체계>

조문	내 용	조문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2장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제3조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제6조	위원장
제7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신분보장 등
제9조	위원의 겸직금지	제10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제13조	위원의 제척 등	제14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15조	의사의 공개	제16조	자문기구
제17조	사무처	제18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0조	업무	제21조	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제22조	청문회	제23조	방문점검
제24조	실태보고서 작성 등		
제4장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처리			
제25조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제26조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7조	수사심의 신청 및 접수	제28조	수사심의신청 사실의 위원회 통보
제29조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 등 처리	제30조	조사 목적의 한계
제31조	조사의 방법	제32조	질문 · 검사권
제33조	고발 및 징계권고	제34조	처리 결과 등의 통지 및 공개
제5장 보칙			
제35조	국민의 정보 접근권	제36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37조	자격사칭 금지	제38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39조	불이익 금지와 지원		
제6장 벌칙			
제40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41조	자격 사칭
제4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	과태료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최초 위원 임기	제4조	대통령령의 제정등

2. 관련 제도 및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찬반론

가. 관련 제도

현행 법령상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로는, 경찰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1991년 구 「경찰법」 제정 시 설치되어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제도 및 인권보호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경찰위원회”²⁾와 해양수산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해양경찰

1) “... 내무부에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제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기하며 ...”(1991년 법률 제4369호 「경찰법」 제정·개정이유 중)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위원회”가 있음.³⁾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주요국의 수사기관 통제 조직 설치 사례로는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가 있음. 일본 국가공안위원회는 내각총리대신 소속이고, 국무대신이 위원장이며, 위원은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있음.⁴⁾ 영국은 지방 단위의 “지역치안평의회”와 내무부장관 소속으로 경찰 권한남용 및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독립경찰행동감시기구(IOPC)”⁵⁾를 운영하고 있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⁶⁾ 등에는 유사한 제도가 없음.

<일본 국가공안위원회 제도 >

법적 지위	소 속	내각총리대신 소속
	관청 여부	○ (대외표시 가능)
	경찰청과의 관계	관리관계*
구성	위원 수	6명
	임 기	5년(1회 연임 가능)

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3) 「해양경찰법」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 략)

4) 일본 경찰법

제4조(설치 및 조직) ① 내각총리대신의 관할 하에 국가공안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공안위원회는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국무대신이 맡는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국가공안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국가공안위원회는 미리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의 유고 시에 위원장을 대리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명) ① 위원은 임명 전 5년간 경찰 또는 검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공무원의 전력이 없는 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양 의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5) 영국 독립경찰행동감시기구(IOPC)는 경찰 등의 심각한 부패 또는 심각한 폭행 혐의, 대규모 인명피해사건, 경찰 연루사건 등을 이첩받거나 직접 조사함.(허경미, 한국경찰의 부패방지를 위한 합리적 통제방향의 모색, 부패방지법연구 제5권제2호, 40쪽)

6)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2018년 헌법 개정 및 감찰법 제정을 통해 국무원 산하 감찰부, 국가부패예방국의 직책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반부패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된 조직으로, 감독감찰 범위를 당내에서 국가기관 전 범위로 확대하고 당의 기율검사와 국가감찰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하는 제도임(황태연,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신설과 특징, 현대중국연구 제22집 3호, 26-27쪽 참조).

	임명권자	내각총리대신
	임명절차	•위원장 : 국무대신 •위원 : 내각총리대신이 양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
기구	운영	경찰청장관 소속 국가공안위원회 회무관[과(課) 단위]
	회의	주1회
권한	일반	•경찰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입안, 예산, 광역범죄, 국제수사공조, 범죄통계, 경찰장비 등 총 27개 항목의 사무 총괄) •규칙제정권, 감찰지시권
	인사	•경찰청 장관, 경시총감, 도부현·방면본부장 등 주요 직위 임명권
	감찰	•감찰지시권 - 감찰조사는 경찰청이 수행 •징계처분 결정

* 공안위-경찰청의 관리관계: 사무집행 세부내용까지의 지휘·감독은 아니지만, 공안위 방침에 부 적합한 경우 필요한 지시가 가능한 관계임.

※ 자료: 경찰청

7) 일본 경찰법

제5조(임무 및 소관사무) ① 국가공안위원회는 국가의 공안과 관련된 경찰운동을 담당하고, 경찰교양, 경찰통신, 정보기술의 해석, 범죄감식, 범죄통계 및 경찰장비와 관련된 사항을 통할하고,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을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② 전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국가공안위원회는 같은 항의 임무와 관련된 특정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내각의 사무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③ 국가공안위원회는 전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각관방을 보조한다.

④ 국가공안위원회는 제1항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무에 관하여 경찰청을 관리한다.

1. 경찰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것

2. 경찰과 관련된 국가의 예산에 관한 것

3. 경찰과 관련된 국가 정책의 평가에 관한 것

4. 다음에 열거하는 사안으로서 국가의 공안 관련 사안에 대한 경찰운영에 관한 것

가. 민심을 불안하게 하는 대규모 재해와 관련된 사안

나. 지방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소란과 관련된 사안

다.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항공기의 강취, 인질에 의한 강요, 폭발물의 소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범죄와 관련된 사안

5. 제71조의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및 실시에 관한 것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역조직범죄 및 그 밖의 사안(이하 "광역조직범죄 등"이라 한다)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의 태세에 관한 것

가. 전국의 광범위한 구역에서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다목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

나. 국외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일본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다목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

다. 사이버보안[사이버보안기본법(2014년 법률 제104호) 제2조에 규정된 사이버보안을 말한다]을 해하거나 정보기술을 이용한 부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하 본 호 및 제25조제1호에서 "사이버 사안"이라 한다)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6호 및 제61조의3에서 "중대 사이버 사안"이라 한다)

1) 다음에 열거된 사무 또는 사업 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우려가 있는 사안

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중요한 정보의 관리 또는 중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사무

나)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기반으로 기능이 정지되거나 저하된 경우에 국민생활 또는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발생하는 것에 관한 사업

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찬반론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된 행정위원회제의 채택 여부는 우리나라 치안 여건의 실정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⁸⁾ 제정안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

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독립된 행정위원회 설치에 찬성하는 견해는, i) 기존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는 제한된 업무와 권한으로 경찰권

-
- 2) 고도의 기술적 방법이 이용되는 사안 및 기타 그 대처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안
 - 3) 국외에 소재하는 자로서 사이버 사안을 발생시키는 부정한 활동을 하는 자가 관여하는 사안
 - 7. 전국적인 간선도로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것
 - 8. 범죄에 의한 수익에 관한 정보의 집약, 정리 및 분석과 관계 기관에 대한 제공에 관한 것
 - 9. 국제형사경찰기구, 외국의 경찰행정기관 및 그 밖에 국제적인 경찰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연락에 관한 것
 - 10. 국제수사공조에 관한 것
 - 11. 국제긴급원조활동에 관한 것
 - 12. 소관사무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것
 - 13.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범죄피해자 등 기본법」(2004년 법률 제161호)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을 말한다. 제21조제21호에서 같다]의 작성 및 추진에 관한 것
 - 14.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1998년 법률 제126호)의 규정에 따른 의견의 진술 및 그 밖의 활동에 관한 것
 - 15. 「무차별 대량살인행위를 한 단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47호)의 규정에 따른 의견의 진술 및 그 밖의 활동에 관한 것
 - 16. 중대 사이버 사안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그 밖에 중대 사이버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에 관한 것
 - 17. 황궁경찰에 관한 것
 - 18. 경찰교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밖에 경찰교양에 관한 것
 - 19. 경찰통신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밖에 경찰통신에 관한 것
 - 20. 범죄의 단속을 위한 전자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및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의 해석 및 그 밖에 정보기술의 해석에 관한 것
 - 21. 범죄감식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밖에 범죄감식에 관한 것
 - 22. 범죄통계에 관한 것
 - 23. 경찰장비에 관한 것
 - 24. 경찰직원의 임용, 근무 및 활동의 기준에 관한 것
 - 25. 전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경찰행정과 관련된 조정에 관한 것
 - 26.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찰에 관한 것
 - 27.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다른 법률(이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 ⑤ ~ ⑦ (생략)

8) 헌법재판소는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를 채택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나라 치안여건의 실정이나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2헌라5 결정).

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치적 중립 확보, 인권보장 등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치안 사무를 관장하고 국가 수사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이 필요하고,⁹⁾ ii) 검찰로부터 독립한 수사기관의 권력기관화 방지와 실질적 통제가 요구되며,¹⁰⁾ iii)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직무 수행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¹¹⁾는 입장임.

9) 김성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그리고 역할의 재정립, 홍익법학 제23권 제2호, 206-207쪽

10) 오병두,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33권 제3호(통권 67호), 23쪽

11)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 참조(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2017. 11. 3. 권고)

II. 권고 내용

1. 국무총리에 소속하되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신설한다.

가)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되는 행정위원회로서 그 소속에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을 두고 이를 관리·감독한다.

나) 근거 법률로 현행 경찰법을 개정하여 독립된 장으로 경찰위원회 관련 규정을 둔다.

2. 다양성 확대와 민주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요건과 신분·임기를 정한다.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 및 임명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위원회 구성에 준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나) 경찰공무원이었던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군·경찰(해경포함)·검찰·국정원에 재직한 사람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 중 사회적 소 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보하며 국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보궐로 임명된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 기 동안 재임한다.

3. 경찰 행정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가)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승진 인사에 있어서는 총경 이상을 대상으로(총경으로의 승진 임용을 포함), 보직 인사에 있어서는 경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경찰청장이 제출 한 인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후 제청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인사정책 및 승진·보직 등 인사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 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나) 법령·규칙 외에도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으로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의 치안정책을 결정하게 한다.

다) 인권 침해 또는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 선·시정요구권을 부여한다.

라)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감찰·징계 요구권을 부여한다.

※ 실제 집행은 「경찰인권·감찰본부즈만(위원회)」(9.8. 既 권고) 또는 경찰 내부 감사·감찰부서에서 수행

마)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요구권을 부여한다.

※ 관서장의 부당 수사 개입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조사는 주로 「경찰인권·감찰본부즈만(위원회)」에서 담당(10.16. 既 권고)

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심의·의결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감찰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이행 담보장치를 마련한다.

사) 위와 같은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자체 규칙 제정권을 부여한다.

4.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내용을 관계 법령에 둔다.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5. 직무상 독립성 강화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사무기구와 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원회에 적절한 규모의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일정 수 이상의 전문위원을 임명하여 전문위원실에 배치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도록 한다.

나) 위원회는 매주 1회 특정 요일에 정기회의를 연다. 위원장, 위원 2인 이상 또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다) 위원회 회의에는 경찰청장과 차장, 기획조정관이 참석하여야 하며, 안건과 관련된 국관과 실무자가 참석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질의에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반대하는 견해는, i) 사법기관이 아닌 정치권력이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하여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것이고,¹²⁾ 종래 수사기관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경찰청장 임기제 등 관련 제도¹³⁾ 등 민주화 이후의 성과에 역행하며,¹⁴⁾ ii) 국가수사위원회의 인력 및 전문성 등의 한계로 모든 수사기관을 관리·감독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¹⁵⁾ iii) 수사기관 위의 국가수사위원회 활동은 자칫 수사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려 수사기관의 범죄 적시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견임.¹⁶⁾

마)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출석위원들이 가부동수일 경우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6. 본 권고안은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권고안'과 연계하여 함께 추진한다.

12) 김종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발제문, 2025. 6. 17. 김수완박 시즌 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18쪽

1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⑥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해양경찰법」

제11조(해양경찰청장)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하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③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14) 차진아,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적 문제점, 2025. 6. 25. 김수완박 시즌 2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46쪽

15) 차진아, 앞의 글, 49쪽

참고로 현행 국가경찰위원회의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직무집행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법률에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안번호 제2201987호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422호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적용범위(안 제2조)

안 제2조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수사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으로 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는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인 여러 수사기관 상호간의 수사와 관련한 협력·조정을 도모하고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다만, 제정안은 그 적용을 받는 수사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국가수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수사기관의 범위는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권에 대한 관여 및 이의신청·수사심의신청

16) 차진아, 앞의 글, 52쪽

등의 대상이 되는 수사 범위와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¹⁷⁾이라는 점에서 입법자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나.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

안 제3조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여 위원회의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현황 >

구 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 적 지 위	소속	독립기관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법적 성격	중앙행정 기관	중앙행정 기관	중앙행정 기관	중앙행정 기관	중앙행정 기관	중앙행정 기관	중앙행정 기관
	사무 기구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구 성	위원수	11명	15명	5명	9명	9명	9명	9명

17)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인 의회유보 원칙을 내포한다.”(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2024, 27쪽)

	임기	3년 (1회 연임)	3년 (1회 연임)	3년 (1회 연임)	3년 (1회 연임)	3년 (1회 연임)	3년 (1회 연임)	3년 (1회 연임)
	위원장	장관급	장관급	장관급	장관급	장관급	차관급	장관급
근거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소관 사무이거나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한 사무일 것이 요구되는데,¹⁸⁾ 제정안의 국가수사위원회는 공수처,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청·중수청¹⁹⁾,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 등 여러 부처·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점에서, 행정각부를 통할·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²⁰⁾ 소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제 상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국가수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어 특정 업무가 아닌 수사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중수청²¹⁾,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감독하는 형태가 될 것임. 이 경우 기관 소속과 관리·감독 간의 불일치가 발생

18) 법률의 소관주의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제기준연구 제2호, 국회 법제실, 2025. 6월, 5쪽

19) 제2210732호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참조

20) 「대한민국헌법」 제86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21) 제2210732호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참조

하고, 「정부조직법」²²⁾에 따라 소속 기관에 대한 지휘 권한을 보유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관계에서 이중적 지휘·감독관계를 형성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가수사위원회의 권한과 관계 장관의 직접 지휘권과의 상호관계 및 권한 범위·성격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조직관리상 효율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 정부조직체계 상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에 따라 “소속청인 경찰청·해양경찰청에 대해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직접 지휘”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에 대한 임명제청권, 부령제정권 등 절차적·형식적 지휘권만을 행사하고 있음.

외부의 감사·감찰권한으로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헌법 제97조)이 있으나, 수사업무가 갖는 특수성 등으로 일반적인 기관운영 감사 외에 적극적으로 감찰활동을 하지는 않는 상황임.

22)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장관의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감사 >

기관	권한	관계법령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	○ 직접 지휘 - 범위: 중요정책수립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감사원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 직무감찰이 가능하나 기관운영감사 외 미 실시	「대한민국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아울러, 국가수사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일부 업무 상 중복될 수 있는 행정안전부 국가경찰위원회²³⁾ 및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위원회²⁴⁾와의 관계 정립 및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24) 「해양경찰법」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장비·시설의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제19조)

안 제4조부터 제19조까지는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

③ 위원은 수사 및 사법제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사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사법제도 및 인권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①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국무총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3.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4. 공소청장이 추천하는 1명

5. 국무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장이 추천하는 1명

④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9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제10조(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수사 절차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사민주화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수사민주화 소위원회에는 국민주권 전문위원회와 수사정보공개 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

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이하 “신청등”으로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피해자인 때
2. 위원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위원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감정수탁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8. 위원이 피의자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② 제26조의 이의신청인, 제27조의 사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의신청인 또는 사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신청등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3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항의 재적위원수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5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최대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제정안은 국가수사위원회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11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국가수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 선출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은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상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주적 통제에 더욱 충실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i)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을 행정부처가 추천하여 결과적으로는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바,²⁵⁾ 국가수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구성 방식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ii) 국가수사위원회 구성의 다원성 보장과 정치적 소수의견 존중을 위해 국회 선출 시 대통령이 소속한 교섭단체가 선출

25) 김종민, 앞의 글, 18쪽

하는 위원의 수와 그 밖의 교섭단체가 선출하는 위원의 수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구성 방법 >

구 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 성	위원수	11명	15명	5명	9명	9명	9명	9명
	방법	대통령:4 국회:4 대법원장:3	대통령:9 (국무총리 제청:4, 권익위장 제청:3) 국회:3 대법원장:3	대통령:2 국회:3 (여1,야2)	대통령:2 당연직:4 금융위장:2 상공회의소장:1	대통령:9 (국무총리 제청:2, 금융위장 제청:7)	대통령:5 (국무총리 제청:1, 원안위장 제청:4) 국회:4	대통령:4 (국무총리 제청:2, 개보위장 제청:2) 국회:5 (여2,야3)

2) 위원 임기(안 제7조)

제정안은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보궐위원은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 임기는 i)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및 중수청장²⁶⁾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과 ii) 다른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위원 신분보장(안 제8조)

제정안은 장기간의 심신장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 외에 이 법

26) 의안번호 제2210732호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함.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전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하도록 규정함. 위원의 신분 보장은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면직 사유와 절차도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임.

제정안은 해당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3호)와 소관직무 관련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제4호)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입법례 중 해당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신분보장 예외로 규정한 사례는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고,²⁷⁾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를 신분보장 예외 사유로 규정한 사례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음.²⁸⁾

4) 위원의 겸직금지(안 제9조)

제정안은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를 규정하면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직, 공무원직 외에 기타 겸직금지 대상은 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27)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무상 의무 위반 시 신분보장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음.

28)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 대한 신분보장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음.

국민권익위원회²⁹⁾, 원자력안전위원회³⁰⁾,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설치 법률에서도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 위원의 영리목적 업무 종사 등을 금지하면서 영리목적 업무의 한계 등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사례가 있음. 다만, 기타 겸직금지 대상을 위원회규칙에 포괄위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겸직금지 사항의 대강이 무엇인지를 법률에서 명확히 표현하고, 위임형식³¹⁾도 위원회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음.

5) 위원 결격사유(안 제11조)

제정안은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³²⁾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3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83 결정례)

3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람, 정당의 당원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함.

제정안은 정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결격사유는 그 도입의 필요성과 공무담임권 제한 간 비교·균형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³³⁾

다만, 현행 국가경찰위원회³⁴⁾ 및 해양경찰위원회³⁵⁾는 위원의 객관성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3)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3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35) 「해양경찰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과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당적 이탈 후 3년, 선출직 퇴직 후 3년 및 경찰 등의 직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위원의 제척 등(안 제13조)

제정안은 위원이 피해자인 때 등에는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거나 회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 의사결정에 있어 이해충돌 방지와 중립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다만, 제정안은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에 한정하여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수사사무 감사·감사의뢰(안 제20조제1항제9호), 수사 담당 공무원 감찰·감찰요구·징계요구(안 제20조제1항제10호·제11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업무 조정·감독(안 제20조제1항제14호) 등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국가수사위원회의 사무의 경우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³⁶⁾ 국가수

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도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제척 사유 중 위원이 피해자인 경우뿐만 아니라(안 제13조제1항제1호), 위원이 피의자인 경우도 제척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7) 사무기구(안 제17조)

제정안은 수사 관련 주요정책 조사·개선 등 국가수사위원회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두려는 것으로, 집행조직인 사무기구의 지위 및 정원 확보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다만, 제정안은 사무기구의 정원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위원회규칙³⁷⁾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제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설치는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여야 하며, 행정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³⁸⁾³⁹⁾

37) 제정안과 유사하게 감사원의 경우 「감사원법」 제17조제2항에서 정원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헌법상 기구라는 특수성이 있음.

38)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

라. 국가수사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안 제3장 제20조~제24조)

안 제3장(제20조~제24조)은 국가수사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0조(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사기관의 수사의 신속성·효율성·공정성 등을 위한 수사 관련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실태조사와 연구 및 개선
2. 수사기관의 수사에 있어 상호 협력·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3. 국민이 자기와 관련된 수사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고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 신청 등 수사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 및 시행
4. 수사 절차에서 국민주권주의 실현 및 국민의 인권보장 방안 연구 및 시행
5. 일반적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6. 수사기관의 주요 수사정책 및 그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수사기관의 수사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8. 수사기관의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의 처리
9. 수사기관의 수사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10. 수사기관의 수사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 및 감찰요구
11. 수사기관의 수사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들도 모두 조직과 정원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독립성이 강조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음.

12. 수사기관의 수사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3. 수사기관의 수사에 있어 입건 전 조사 및 송치 또는 불송치된 사건의 수사 적법성·적정성, 주요 수사정책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업무개선 방안 등의 제안
14.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에 관한 업무의 조정·감독
1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6.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17.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방문점검) ① 위원회(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송치 또는 불송치된 사건의 수사 적법성·적정성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점검을 하는 위원, 직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점검을 받는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점검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원등은 점검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관계서류·장부·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의 출석, 진술서의 제출,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담당 수사관은 위원등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담당 수사관이 위원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원등은 수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사건관계인 등은 위원등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⑥ 위원등은 점검을 종료한 후 수사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수사점검결과서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⑦ 그 밖에 방문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실태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에 활동 내용과 수사 실태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와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수사위원회의 업무(안 제20조제1항제1호~제18호)

제정안은 국가수사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주요 수사정책 연구·지원(제1호·제3호·제4호·제6호), 수사기관 상호 간 협의·조정(제2호), 수사 관련 법령 제정·개정·폐지(제5호), 이의 신청·수사심의신청 처리(제7호·제8호), 수사사무의 감사·감찰(제9호·제10호), 수사공무원 징계요구·고충심사(제11호·제12호), 수사 적법성·적정성 및 추진상황 점검(제13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에 관한 업무의 조정·감독(제14호) 등이 주요 내용임.

관리·감독기능 및 집행기능이 없는 현행 국가경찰위원회와 비교할 때, 제정안의 국가수사위원회는 감사·감찰, 징계요구 등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감독권과 주요 수사정책,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수사심의 신청 처리 등 상당한 집행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다만, 국가수사위원회의 업무범위 설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위원회의 사무로 주요 수사정책(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수사 관련 법령 제정·개정·폐지(제5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는 「정부조직법」⁴⁰⁾ 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 치안 사무 및

40)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해양 경찰사무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직접 지휘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직무권한과 중복·충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행정조직의 전체적인 업무분장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⁴¹⁾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사기관의 수사에 있어 상호 협력·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제2호) 도모는 국가 수사권 관련 복수의 수사기관 간 경합이 초래할 수사권 체계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상호협력·조정 방안을 해당 기관 관련 법령에서 제도화하는 것이며, 수사기관 간 협력·조정 역시 국가수사위원회가 협의·조정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위원회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수사 지연 등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간 수사권을 조정할 것인지는 제정안이 구체화하지 않았는바, 수사기관 간 수사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44조(해양수산부)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4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2. 기존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기존행정기관의 기구개편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

권 협력·조정이 객관적·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셋째,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에 관한 업무의 조정·감독(제14호)의 경우,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한은 「형사소송법」⁴²⁾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고, 안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협력·조정 및 통제 대상 수사기관 범위에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바, 위원회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에 대해 조정·감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마.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25조는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처리를 위해 국가수사위원회 내에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제 정 안
제25조(국가수사심의위원회) ① 각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국가수사위원회에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불공정한 수사권 행사

4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등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수사권조정합의문에서도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결정의 적법·타당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한 바 있음.⁴³⁾ 그에 따라 경찰청예규 및 해양경찰청예규로 국가수사본부 및 해양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⁴⁴⁾ 2018년 대검찰청예규에 근거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외부 자문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⁴⁵⁾를 두었으며, 2021년 공수처예규에 근거해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⁴⁶⁾를 설치하였으나, 대외적 구속력

43) <수사권조정합의문>

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익권 등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44)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10조(설치 및 심의대상) ① 국가수사본부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에 관한 사항
2. 「범죄수사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사건에 관한 사항
3.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5. 주요 수사정책 등에 관한 자문 및 권고
6. 특별수사본부장 심사 추천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예규)

제11조(설치·구성) ① 수사심의신청사건 등 수사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5)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이 없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의 구속력⁴⁷⁾과 실효성 등이 부족하고,⁴⁸⁾ 심의의 객관성·공정성·독립성·전문성 보장이 미흡했다는 점에서,⁴⁹⁾ 독립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려는 입법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국사수사위원회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합의제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행정위원회 사례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위원회⁵⁰⁾와 금융위원회의

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공수처예규)

제2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3. 6.>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
2.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진행 방향
- 2의2.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3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첩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
4. 그 밖에 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47) “이는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12. 26. 선고 2023헌마1328 결정례)

48) 임제강, 바스티아의 자유주의 관점으로 본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 범죄수사학연구 제11권 제1호(통권 제22호),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18쪽

49) 명도현·박호현, 수사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9권제3호, 92-93쪽

50)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증권선물위원회⁵¹⁾가 있으나, 이들 위원회는 각각 특정 분야의 전문성,⁵²⁾ 업무처리의 독자성,⁵³⁾ 과거의 제도 운영 연혁⁵⁴⁾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따른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 및 사법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고(안 제4조제3항),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이 관련된 이의신청·수사심의신청 사건의 경우 제척 등의 사유를 규정(안 제13조)하고 있는 제정안의 체계를 고려할 때, 국가수사위원회가 직접 이의신청·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정안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의결이 행정청을 구속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률에 위원회 설치 근거와 함께 위원회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위

5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5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53)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54)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64년 국무총리소원심의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에서 시작되어,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가 복잡하고 다원화된 금융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되, 증권 및 선물시장 감시를 위하여 별도 기구로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설치하는 개편안 제시함에 따라,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었음.

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⁵⁵⁾ 국가수사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바. 이의신청·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처리(안 제26조~제34조)

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안 제26조)과 수사기관의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안 제27조)의 처리와 그에 필요한 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6조(불송치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해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도 같다. ②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기관에게 재수사를 하게 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건을 이첩하여 수사하게 하거나, 검사에게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국가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이첩의 경우에는 수사기관별 수

55)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2024, 288쪽

사권의 범위에 관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범위 내에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수사심의 신청 및 접수)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수사기관의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수사심의위원회 또는 수사기관(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중수처·국수본·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을 말한다)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이하 “당해 수사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사기관등에서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명백히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⑤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수사심의신청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심의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수사심의신청 사실의 위원회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의 장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기로 한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지체 없이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 등 처리) ①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이하 “당해 수사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사기관등에서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④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수사심의신청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조사 목적의 한계) ①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제26조 및 제27조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사관에게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수사관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4. 감정의 의뢰

5.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③ 국가수사심의위원회의 직원이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계 수사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심의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질문·검사권) ①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제31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 곳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파악하려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3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조사한 결과 수사심의신청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②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직권남용 또는 부당한 처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신청인 또는 그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가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처리 결과 등의 통지 및 공개) ①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 및 관계 수사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수사심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처리 결과, 수사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수사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2018년 수사권조정합의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였고,⁵⁶⁾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⁵⁷⁾은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수사기관의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제도는 수사 자체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제도임.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사절차에서의 시민참여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⁵⁸⁾ 종래 구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경찰청예규)으로 도입되었고, 2021년 같은 예규에서 수사심의신청제도로 변경개정되어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

56) <수사권조정합의문>

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57)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8) 김현철,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법적 성격, 통제방법 및 통제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제7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418쪽

심의위원회 의결의 구속력·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신청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입법취지를 인정할 수 있음.

아울러, 제정안의 조사방법 및 처리 결과에 관한 규정(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은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를 조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례들 중 「국가인권위원회법」⁵⁹⁾과 유사한 내용으로 보임.

5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5조(조사 목적의 한계)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또는 그 자료, 물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

2.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37조(질문·검사권) ① 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 곳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파악하려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등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

다만,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 처리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첫째,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제도는 해당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그 처분청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이 스스로 처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간이한 방식의 구제절차인 점,⁶⁰⁾ 「형사소송법」⁶¹⁾에서 이의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수사상 처분을 한 수사기관 또는 그 상급 기관이 이의신청 처리를 통해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⁶²⁾ 해당 수사의 처분청 또는 그 상급 기관이 아닌 국가수사위원회 소속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서만 단독으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것은 법체계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둘째,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기관 내부의 재검토 절차와 별도로 외부 기관이 그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불송치 결정은 형사절차 상 이루어지는 중국적⁶³⁾

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 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 박훈민, 행정기본법 및 기타 법령상 이의신청제도와 그 개선방향, 행정법학 제27호,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330쪽; 행정기본법 해설서, 법제처, 2021, 368쪽

6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2) 외부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는 입법례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제4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으나,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소관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음.

63) 김현철, 앞의 글, 407쪽

· 준사법적(準司法的) 성격의 처분이라는 점에서,⁶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외부적 통제방안으로서 사법적 통제⁶⁵⁾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제정안은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의 절차, 방법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수사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측면, 국민의 이의신청권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국가수사위원회 또는 그 소속 위원회가 단독으로 정하는 행정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⁶⁶⁾

넷째, 제정안은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사 관련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제도는 사법적(司法的) 권리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비사법적·보충적인 권리구제 제도로서,⁶⁷⁾ 제정안의 이의신청·수사심의신청 처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수사심의위원회의 조사 권한·방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함.⁶⁸⁾

64) 강소영, 수사종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불송치결정과 수사종결의 관계, 인권과정의, 제491호, 36쪽

65) 강소영, 앞의 글, 46쪽

66) 행정입법의 종류와 선택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제기준과 실제(2024) 35쪽 참조

67) 홍성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34집, 81쪽

68) 안 제29조의 내용은 안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조문 체계적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행정기관 대상 조사 규정 비교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고충민원)	감사원 (「감사원법」)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에규)]
○ 조사 목적의 한계 (제35조) ○ 조사의 방법 (제36조) ○ 질문·검사권 (제37조) ○ 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44조) ○ 고발 및 징계권고 (제45조) ○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제48조) ○ 처리 결과 등의 공개 (제49조의2)	○ 조사의 방법 (제42조) ○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46조) ○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47조) ○ 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50조) ○ 감사의 의뢰 (제51조) ○ 공표 (제53조)	○ 계산서 등의 제출 (제25조) ○ 서면감사·실지감사 (제26조) ○ 출석답변·자료제출·불인 등 (제27조) ○ 감사의 생략 (제28조) ○ 변상책임의 판정 등 (제31조) ○ 징계 요구 등 (제32조) ○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32조의2) ○ 시정 등의 요구 (제33조) ○ 개선 등의 요구 (제34조) ○ 권고 등 (제34조의2)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34조의3) ○ 고발 (제35조)	○ 수사심의신청에 따른 조사 (제3조) ○ 조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3조의3) ○ 심의결과의 통보 등 (제24조)

사. 보칙(안 제5장 제35조~제39조)

제정안 제5장은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절차적·부수적 사항으로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안 제35조), 위원·직원의 비밀누설 금지(안 제36조), 자격사칭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안 제37조·제38조), 불이익금지(안 제39조)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5조(국민의 정보 접근권) ① 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 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과 수사심의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홈페이지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의신청과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9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민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가로서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거나, 위원회에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의견 제시한 전문가, 자문인, 기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 사람 등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자격사칭 금지(안 제37조)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안 제38조)의 경우, 행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입법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⁶⁹⁾ 일반적으로 자격사칭 및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자격

6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자나 자격단체 또는 특수법인·단체의 권리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자격자의 자격자 사칭이나 유사단체 난립으로 발생할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⁷⁰⁾ 공무원 사칭이나 행정기관 유사 명칭 사용은 「형법」⁷¹⁾에 따라 처벌될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체계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아. 벌칙(안 제6장 제40조~제43조)

안 제6장은 업무상 비밀누설죄(안 제40조), 자격 사칭죄(안 제41조), 벌칙 적용상 공무원 의제(안 제42조) 및 과태료(안 제43조)⁷²⁾에 관하여

70) 법제기준과 실제, 2024, 742쪽

71)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2) 공공기관의 자료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을 규정한 입법례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2. 1. 4.>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0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6조에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자격 사칭) 제37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방문점검 또는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출석요구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1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제31조제2항제5호에 의한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정안의 벌칙 규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첫째, 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민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

지 아니하도록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안 제39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는바, 불이익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 규정 보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비교 >

구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감사원 (「감사원법」)
불이익 금지	○ 불이익 금지와 지원(제55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62조)	-
위반 시 처벌	-	○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 정 불이행의 죄 (제90조) - 신분상실 불이익조치: 3년↓, 3천 만원 ↓ - 그 밖의 불이익조치: 2년↓, 2천 만원 ↓ ※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동일함.	-

둘째, 제정안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안 제42조), i) 공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형법」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당 업무와 관련한 경우로 명확히 하고, ii) 업무의 공공성 정도, 업무의 성질, 위원의 업무 관여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적용 대상 벌칙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⁷³⁾ iii) 조문 체계상 보칙(안 제5장)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7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는 경우 업무의 공공성 정도, 수탁업무의 성질, 임직원의 업무의 관여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용 벌칙의 범위를 결정한다. 입법례는 ① 벌칙 적용을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형법」 중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②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를 포함하거나, ③ 「형법」.상 모든 공무원 관련 범죄(「형법」 제2편제7장)와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까지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2024, 748쪽)

자. 부칙(제1조~제4조)

안 부칙에서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일(안 부칙 제1조), 위원 임기개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최초 임기에 대한 특례(안 부칙 제3조), 대통령령 제정 건의(안 부칙 제4조)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 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상임위원은 2년임기 2명(위원장 포함), 3년임기 2명으로 각각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2년임기 3명, 3년임기 4명으로 각각 임명한다.
제4조(대통령령의 제정등)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1) 시행일(안 부칙 제1조)

제정안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되,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수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법안에 따라 다원화된 수사기관의 조정·협력 및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시행 시기는 ① 검찰 수사권 개혁 추진상황뿐만 아니라, ② 경찰 등 수사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함께 고

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최초 임명 위원 임기 특례(안 부칙 제3조)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를 본칙의 규정(안 제7조, 2년)과 달리, 6명의 위원(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4명)에 대해서는 3년 임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⁷⁴⁾

이는 위원 임기가 일시에 도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 업무 공백을 막고 위원 구성의 정치적 다원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사료되나, 위원 구성 방법이 다양한 점에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출권자(국회)·지명권자(대통령)·추천권자(추천위원회)를 구분하여 3년임기로 하는 위원의 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3) 대통령령안 제출 건의(안 부칙 제4조)

안 부칙 제4조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안 부칙 제4조와 관련해서는 본칙 안 제6조제4항에서 위원장이 대통령령안을 포함한 의안의 제출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74) 1991년 구「경찰법」 제정시, 최초 임명되는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차등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음.

구「경찰법」

부 칙 <법률 제4369호, 1991.5.31>

제2조 (최초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7인중 2인(委員長 및 常任委員)은 3년, 5인은 2년으로 한다.

록 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이 법 시행 전에도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규정의 필요성 또는 표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종합의견

검찰 수사권의 개혁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서 다원화된 수사기관의 조정·협력 및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과 기존 국가경찰위원회·해양경찰위원회가 가진 권한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및 기관상호간 견제역량과 문제 발생 시 협력과 해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 설치 찬반론 각각의 논거, 국민의 법 감정, 정책적 필요성, 형사정책적 고려와 함께 사회각계각층으로부터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궁극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문 의 처

02)6788-5056
